

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

- 영업 취소 사유 합리화로 영업자 부담 완화하는
법률·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

예상하지 못한 환경적·외부적 요인으로, 영업허가 시 의무적으로 부여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과 대통령령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붙임: 개정안 목록 및 내용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친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은 일부 업종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법령도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령도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전염병 확산 또는 대형재해 등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부가통신사업

자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장마로 물류창고가 침수되어 불가피하게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등의 경우에는 1개월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영업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업무 미수행 기간’을 6개월로 완화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❶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❷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며, ❸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전염병이나 재난과 같이 불확실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영업자들에게 영업 취소라는 이중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처분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책임자	과 장	이진희	(044-200-6571)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044-200-6576)

<개정대상 법률 목록 및 개정 내용>

개정안	제명	개정 내용	소관부처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개교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18조제1항제2호)	교육부
2	전기통신사업법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였다는 사유로 부가통신사업의 폐업을 명령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7조제1항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3조제3항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14조제3항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조·판매업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영업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5조제1항제1호)	국방부
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39조제1항제2호)	행정안전부

7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유로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12조제1항제1호)	농림축산식품부
8	식물방역법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영업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41조제2항제2호)	농림축산식품부
9	초지법	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12조제1호)	농림축산식품부
1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5조의6제1항제5호)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1조제4항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12	전기공사업법	·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1조제2호) ·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였다는 사유로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8조제1항제7호)	산업통상자원부
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8조제2항제3호)	보건복지부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5조제3항제3호)	환경부
1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17조제4호 및 제5호)	환경부
16	수도법	·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 설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63조제1항제1호) ·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업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63조제1항제2호)	환경부
17	폐기물관리법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7조의2제2항제2호)	환경부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제16조의6제1항제5호)	환경부
19	환경보건법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	환경부

		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3조의2제5항제4호)	
2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4항제2호)	여성가족부
21	아이돌봄 지원법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9조제2항제3호)	여성가족부
2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9조제3항제2호)	해양수산부
2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17조의2제2호)	해양수산부
24	항만운송사업법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다는 사유로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의5제1항제4호)	해양수산부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가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14제3호)	중소벤처기업부
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영업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13조제2항제3호)	금융위원회
2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49조제2항제5호)	금융위원회

<개정 대상 대통령령 목록 및 개정 내용>

제정안	대상 법령	개정 내용	소관부처
안 제1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공 후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다는 사유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15조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조	수산업법 시행령	1년 이상 계속하여 양륙하거나 매매한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35조제1항제2호)	해양수산부
안 제3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인증 취득 후 1년 동안 측정·분석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측정·분석능력인등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8조)	해양수산부